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5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 송옥주·임종성·서삼석

박 정・유동수・이성만

안호영 · 박성준 · 박용진

박찬대 · 정춘숙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보급이 늘고 있는데,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저소음으로 인해 차량 근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. 보행자가 주변에 주행 중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음을 인지하는 거리가 짧아 보행자 사고가 20% 증가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, 저소음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미국, 일본 등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주변의 주행 중인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,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않았음.

이에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

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의6 및 제29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6. "저소음자동차"란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연료전지자 동차 등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4(저소음자동차 접근경보장치)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 전기준에는 저소음자동차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 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의5. (생 략)	1. ~ 1의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6. "저소음자동차"란 전기
	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
	연료전지자동차 등 전동기로
	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
	를 가진 자동차로서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
	<u>한다.</u>
2. ~ 14. (생 략)	2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제29조의4(저소음자동차 접근경
	보장치) 제29조제1항에 따른
	자동차안전기준에는 저소음자
	동차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
	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의 설
	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
	<u>한다.</u>